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48

발의연월일: 2021. 1. 8.

발 의 자:김민석·강득구·강병원

박상혁 • 박홍근 • 변재일

유정주 • 윤영찬 • 이수진

최혜영 · 한병도 · 허종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를 성인이 아동에게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어, 가정에서 부모 사이에 폭력이 발생하여 아동이 심리적 피해를 입는 경우도 아동학대인지 명확하지 않음.

그러나 가정에서 상습적인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아동은 직·간접 적으로 심리적 피해를 입게 되고, 이 같은 피해가 누적되면 성인이 된 후 본인이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또 다른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등 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음.

이에 부모가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아동학대에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 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것과"를 "것(가정구성원인 성인이 상습적으로 「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 죄를 범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제3조(정의) |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 | 7 |
| 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 |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 | |
| 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
| ·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 | |
| 혹행위를 하는 <u>것과</u> 아동의 | <u>것(가정구성원인</u> |
|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 성인이 상습적으로 「가정폭 |
|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
| | 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 |
| | 정폭력범죄를 범하는 경우를 |
| | <u> 포함한다)과</u> |
| | |
| | |
| 7의2. ~ 11. (생 략) | 7의2. ~ 11. (현행과 같음) |